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135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2022. 1. 24. 6,000,000원, 2022. 1. 26. 12,000,000원, 2022. 2. 15. 12,000,000원, 2022. 2. 23. 18,000,000원, 2022. 4. 5. 18,000,000원, 2022. 4. 7. 18,000,000원, 2022. 8. 10. 1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김국식

별지